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4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이언주 · 민병덕 · 민형배

이기헌 • 이재강 • 소병훈

이재관 • 이상식 • 정성호

이개호 · 문정복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 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 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 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 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미취학아동의 관리) ①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3조의2(미취학아동의 관리) ① |
| |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
| | 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 |
| | 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 |
| | 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
| | 독촉하여야 한다. |
| |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
| |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 |
| | 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 |
| | 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
| |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 |
| | 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 |
| | 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
| | 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 ③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
| |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
| |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
| |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 |
| | 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 |
| | 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 |
| | <u>하여야 한다.</u> |